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85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권향엽 · 강준현 · 최민희
허성무 · 김준환 · 곽상언
박 정 · 오세희 · 임미애
정일영 · 이재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과 범인이 사용했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폐기·소각하였는데, 피의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당 특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지 않았음.

그런데,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인멸에 가담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특례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の 特例) ① (생 략) <u>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	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の 特例) ① (현행과 같음) <u>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の 特例) ① ~ ③ (생 략) <u>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	第155條(證據湮滅 等과 親族間の 特例)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